

● **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4-336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배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손실보전금도 증가하여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본재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나,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운용배수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재보증 사업의 운용배수에 비해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안정적인 재보증 지원을 위해 금융회사 출연금의 배분비율을 조정하여 정부재정 외에 추가 재원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가.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간 출연금 배분비율을 현행 70대30에서 60대40으로 변경하여 재보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도모함(안 제1호 가목)

나. 고시의 재검토기한 현행화(안 제4호)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24일 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참조 : 기업금융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trustkis@korea.kr

2) 주소 : (우)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림로 180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

3) 팩스 : (044) 204 - 7539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전화 : (044) 204 - 752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